

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규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6일  
발 의 자: 김규남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경기문, 김영옥, 김원중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형재,  
김혜지, 박영한, 송경택,  
신복자, 심미경, 유정인,  
이경숙, 이상욱, 이숙자,  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환,  
최유희, 황유정, 황철규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특별시 조례에 문화관광형시장 및 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제8호 신설)
- 나.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5호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"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"이란 전통시장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에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8. "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"이란 전통시장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제 1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b></p>
<p>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5.</u>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5.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</b></p> <p><b>6.</b>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